

의안번호	2218453
의 퇴 인	최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 6. 9.
추계번호	26B2191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4(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)	정부는 <u>이공계 신진연구자[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, 박사후연구원(박사학위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·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</u>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,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(제1항) ※ 정부의 지원 대상을 ‘이공계 박사후연구원’에서 ‘이공계 신진연구자(박사후연구원 포함)’로 확대	의무규정
2	안 제20조(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)	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또는 <u>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</u>(이하 “핵심 이공계인력”이라 한다)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(제1항) ※ 연구장려금 등 지원 대상에 ‘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’ 추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4(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(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)	

2. 상세 사유

- **현행법¹⁾은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²⁾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,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, 국가과 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**
- **개정안은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, 연구환경 개선, 연구장려금 지원 등 국가의 지원 대상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,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**
- **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, 인재 양성 및 활용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**
 - **다만, 신진연구자는 법적으로 그 대상이 정의되지 않았으며, 각 사업별로 지원자격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**
 - － 예를 들어, 개인기초연구사업(신진연구사업)의 경우 지원 자격 요건을 ‘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·정부출연·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’으로 하고 있으며, 나노·소재기술개발사업(소재글로벌영커넥트사업)의 경우 ‘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 연구자’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

1) 법 제9조의4(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)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“이공계 박사후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,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법 제20조(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(이하 “핵심 이공계인력”이라 한다)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2) 시행령 제8조의3(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)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박사후연구원”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·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표 1]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사업내용	예산('26)
인재활용확산지원 (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)	국가전략기술 R&D에 투입될 우수인력의 확보와 해당 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, 박사급 고급인력의 안정적인연구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계 진출을 지원 -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전략기술 연구성과 창출 및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경력 형성 도모	1,950
핵융합선도기술개발 (Korea-ITER 박사후연구원 지원)	한국인 신진인력 대상 ITER(국제공동 핵융합 실험) 국제기구 근무를 통한 주요 기술분야 박사후 연구원 연구 지원 - 매년 약 3명의 한국인 Post-doc 신규 선발을 통해 향후 국내 핵융합 연구 개발을 선도 할 수 있는 핵융합 전문인력 선제적 양성	1,044
한국과학기술원·울산 과학기술원·광주과학 기술원·대구경국과학 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(AI 국가대표 양성(InnoCORE))	국내·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, 산·학·연 연구진과의 집단·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- AI 분야의 국내외 Top 수준 박사후연구원 중심으로, 4대 과학기술원의 중장기 집단·융합연구를 지원	105,000
개인기초연구 (신진연구)	신진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수월성 배양을 위한 창의적 연구 지원 -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신진연구사업 과제 수행 지원	497,523
AI최고급 신진연구자지원	AI 융합 분야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·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최고(Global Top-tier) 수준의 AI 인재 양성 - AI분야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자 중심의 연구과제 구성 및 연구자 성장 중심의 지원	34,000
나노·소재기술개발 (소재글로벌영커넥트)	신진연구자의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소재 연구를 지원하여,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-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나노소재 기술개발 지원	22,725
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(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강화)	아태 연구거점(아태이론물리센터)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수준 향상 추진 - 아태지역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만40세 미만 또는 박사후 7년 이내의 기초과학(이론물리)분야 연구원을 공개선발·직접고용	5,073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, 개정안은 신진연구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